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방개혁실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25일에서 2023년 7월 25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「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7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및 국방개혁실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며, 기획조정실 및 국방개혁실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,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7. 0. ~ 7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방부령 제 호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6항 중 “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”을 각각 “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”으로, “사이버대응기술팀장”을 각각 “사이버대응전력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이버대응기술팀장”을 “사이버대응전력팀장”으로 한다.

⑯ 정보체계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

1. 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
2.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 검토 및 조정
3. 국방정보체계의 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
4.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계획 및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
5. 전자정부 구축 관련 정보의 공유·유통·공동이용에 관한 업무
6. 국방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·시행
7.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
8. 국방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 및 발전

⑰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

좌한다.

1.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
2.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중기계획 검토·조정
3.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구축에 관한 업무
4. 군 주파수 획득 및 관리정책의 수립·조정·통제
5.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·감독
6.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관리

제6조제4항제6호 중 “손·망실(損·亡失)”을 “손실·분실”로 하고, 제19조제3항 중 “미래군구조기획담당관”을 각각 “미래국방기획담당관”으로, “스마트국방혁신담당관”을 각각 “국방혁신기술담당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중 “지휘·병력·부대구조”를 각각 “군구조(지휘·병력·부대·전력구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미래군구조기획담당관”을 “미래국방기획담당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7호부터 9호까지를 같은 항 제 9호부터 제11호까지 하며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미래국방비전 수립 및 발전분야의 총괄·조정
8. 미래국방비전 연구·기획

제19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스마트국방혁신담당관”을 “국방혁신기술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방 지능화·무인체계 발전에 필요한 혁신분야 총괄·조정
5. 국방 신기술 적용 소요에 대한 연구

별표 6 제1호 중 “2021년 7월 25일”을 “2023년 7월 25일”로 한다.

국방부령 제92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(국방부령 제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방부령 제100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제1항 중 “제4조의2제3항·제16항”을 제4조의2제6항·제19항”으로, “사이버대응기술팀”을 “사이버대응전력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이버대응기술팀장”을 각각 “사이버대응전력팀장”으로 한다.

국방부령 제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“2021년 10월 31일까지”를 “2023년 10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 ~ ⑤ (생략)	제4조의2(기획조정실장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 담당관·조직총괄담당관·조직 관리담당관·혁신행정담당관· 계획예산총괄담당관·인력운영 예산담당관·전력유지예산담당 관·재정회계담당관·정보화기 획담당관·정보체계융합담당관 · <u>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</u> ·사 이버정책담당관 및 <u>사이버대응 기술팀장</u> 각 1명을 두되, 기획 총괄담당관·조직총괄담당관· 조직관리담당관·혁신행정담당 관·계획예산총괄담당관·인력 운영예산담당관·전력유지예산 담당관·재정회계담당관·정보 화기획담당관·정보체계융합담 당관 및 사이버정책담당관은 부 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 관으로, <u>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 관</u> 은 영관급장교로, <u>사이버대응 기술팀장은</u> 서기관·기술서기 관·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</u> ----- ----- <u>사이버대응</u> <u>전력팀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</u> <u>관</u> ----- <u>사이버대응</u> <u>전력팀장</u> ----- -----

공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보건
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
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
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
다.

⑦ ~ ⑮ (생략)

⑬ 정보체계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

1. 삭 제

2. 국방정보체계 · 정보통신기반 의 중기계획 검토 및 조정

3. 국방정보체계 · 정보통신기반 의 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

4. 국방정보체계 · 정보통신기반 의 개발 계획 및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

5. 국방정보체계 · 정보통신기반
의 시험평가 조정 · 통제에 관
한 업무

6. 국방정보체계 · 정보통신기반
의 형상관리, 품질보증 및 감
리에 관한 업무

7. 전자정부 구축 관련 정보의
공유 · 유통 · 공동이용에 관한
업무

[illegible]

⑦ ~ ⑮ (현행과 같음)

⑩ 정보체계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

1. 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 및

제도의 발전

2.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 검토 및 조정

3. 국방정보체계의 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

4.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계획
및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

5. 전자정부 구축 관련 정보의
공유 · 유통 · 공동이용에 관한
업무

6. 국방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·시행

7.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

8. 국방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

8. 국방정보체계·정보통신기반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·시행 9. 국방정보체계·정보통신기반 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 전에 관한 업무 10.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·감독 11. 삭 제 12. 삭 제 13.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운 용 관리 ⑰ 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 장을 보좌한다. 1. 국방정보통신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. 국방네트워크 관련 중기계획 과 예산 편성의 검토·조정 3. 국방네트워크 관련 개발·획 득·집행 및 승인에 관한 업 무 4. 삭 제 5. 삭 제 6.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의 개 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	및 발전 ⑰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 장을 보좌한다. 1. 국방정보통신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.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중 기계획 검토·조정 3.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구 축에 관한 업무 4. 군 주파수 획득 및 관리정책 의 수립·조정·통제 5.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·감독 6.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	립·시행 7. 삭 제 8. 삭 제 9. 군 주파수 획득 및 관리정책 의 수립·조정·통제 10. 국방정보체계의 소프트웨어 정책에 관한 업무 11.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과 시 험평가·인증에 관한 업무 12. 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업무 ⑱ (생 략) ⑲ 사이버대응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 1. ~ 8. (생 략) 제6조(감사관) ① ~ ③ (생 략) ④ 회계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. 1. ~ 5. (생 략) 6. 전비품·통상품 및 금전의 손·망실(損·亡失) 처리에 관한 업무 7. ~ 9. (생 략)	관리 ⑱ (현행과 같음) ⑲ 사이버대응전력팀장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제6조(감사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손실·분실 ----- ----- 7. ~ 9. (현행과 같음)
---	--	---	---

⑤·⑥ (생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(국방개혁실) ①·② (생략)	제19조(국방개혁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방개혁실장 밑에 군구조개혁담당관·미래군구조기획담당관·국방운영개혁담당관 및 스마트국방혁신담당관 각 1명을 두되, 군구조개혁담당관 및 미래군구조기획담당관은 영관급 장교로, 국방운영개혁담당관 및 스마트국방혁신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	③ -----미래국방기획담당관-----국방혁신기술담당관-----미래국방기획담당관-----국방혁신기술담당관-----
④ 군구조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	④ -----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지휘·병력·부대구조 개혁 분야 정책의 총괄·조정	11. 군구조(지휘·병력·부대·전력구조) -----
12. 지휘·병력·부대구조 개혁 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	12. 군구조(지휘·병력·부대·전력구조) -----
13. 지휘·병력·부대구조 개혁 분야의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·시행	13. 군구조(지휘·병력·부대·전력구조) -----
14. 지휘·병력·부대구조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·부서의 연	14. 군구조(지휘·병력·부대·전력구조) -----

도별 시행계획 종합	-----
15. 지휘·병력·부대구조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·평가	15. 군구조(지휘·병력·부대·전력구조) -----
16. 지휘·병력·부대구조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	16. 군구조(지휘·병력·부대·전력구조) -----
17. (생략)	17. (현행과 같음)
⑤ 미래군구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.	⑤ 미래국방기획담당관-----
1. 전력구조 개혁 분야 정책의 총괄·조정	<삭 제>
2. 전력구조 개혁 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	<삭 제>
3. 전력구조 개혁 분야의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·시행	<삭 제>
4. 전력구조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·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	<삭 제>
5. 전력구조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·평가	<삭 제>
6. 전력구조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	<삭 제>
<신 설>	7. 미래국방비전 수립 및 발전

<신 설> 7. ~ 9. (생 략) ⑦ (생 략) ⑧ <u>스마트국방혁신담당관은 다</u> <u>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</u> <u>한다.</u> 1. ~ 3.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 ⑨ (생 략) 국방부령 제924호 국방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) ① 「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 및 제4조의2제3항·제 1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된 <u>사이버대응기술팀</u>은 2022년 5 월 1일까지 존속한다.	<u>분야의 총괄·조정</u> 8. <u>미래국방비전 연구·기획</u> 9. ~ 11. (현행과 같음) ⑦ (현행과 같음) ⑧ <u>국방혁신기술담당관</u>----- ----- 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국방 지능화·무인체계 발전</u> <u>에 필요한 혁신분야 총괄·조</u> <u>정</u> 5. <u>국방 신기술 적용 소요에 대</u> <u>한 연구</u> ⑨ (현행과 같음) 국방부령 제924호 국방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4조의2제6항·제</u> <u>19항</u>----- <u>사이버대응전력팀</u>----- -----.
--	--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<u>사이버대응기술팀장</u>이 기획조 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 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 이 지난 날부터 <u>사이버대응기술</u> <u>팀장</u>이 보좌하는 사항은 사이버 정책담당관이 보좌한다. 국방부령 제974호 국방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(행정사무관 1명)은 <u>2021년</u> <u>10월 31일까지</u> 존속한다	② ----- <u>사이버대응전력팀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이버대응전력</u> <u>팀장</u>----- -----. 국방부령 제974호 국방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간) ----- ----- ----- <u>2023년</u> <u>10월 31일까지</u> -----
--	---